

제 호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	
업 체 명	대표자 성명
	사업자등록번호
소 재 지	(전화번호:)
임 무	
지정 사유	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.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	